

()년 ()월 운수종사자 교육 결과 통보서

[illegible]

※ 구분란은 신규교육(제58조제1항 관련), 보수교육(제58조제2항 관련)으로 구분

※ 업종란은 시내버스운송사업, 농어촌버스운송사업, 마을버스운송사업, 시외버스운송사업, 전세버스운송사업,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, 일반택시운송사업,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으로 구분